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등급변화, 수가변경 등의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변경한다 .

4. 계약기간의 연장

- 1)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 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3)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4)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가지방법(직접 통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보호자밴드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 2) 급여비용 변경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 3) 이용료 납부방법
 - ① 당월 청구되는 이용료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와 전월 이용료의 정산내용을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고지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7.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서비스명	서비스제공방법	비용	비고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기본비용에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기본비용에 포함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	기본비용에 포함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기본비용에 포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동행(차량이용 포함), 산책시 부축	기본비용에 포함	제천지역 외 동행서비스 없음. 단, 보호자가 없어 동행해야 하는 경우 비급여.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본비용에 포함	
기능회복 훈련	신체·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씨라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기본비용에 포함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 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비용에 포함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 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기본비용에 포함	
	일상생활동작 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기본비용에 포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기본비용에 포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기본비용에 포함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기본비용에 포함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기본비용에 포함	
	투약관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본비용에 포함	약재비 비급여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기본비용에 포함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기본비용에 포함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기본비용에 포함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기본비용에 포함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및 교환, 단순 도뇨실시, Finger evacuation 실시 관찰, 장루간호 등	기본비용에 포함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위독시 간호 등	기본비용에 포함	
	의사 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의뢰 등에 대한 보조	기본비용에 포함	병원비 비급여
	침구·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기본비용에 포함	
시설 환경관리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기본비용에 포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기본비용에 포함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기본비용에 포함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본비용에 포함	
기타서비스	인지관리 지원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문제행동 대처	기본비용에 포함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콜벨 대처	기본비용에 포함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등	기본비용에 포함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제한이 행해질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별지 15-1, 15-2)

- 5)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6)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췌선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상급 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⑤ 회복기 환자의 경우 빠른 쾌유를 위해 영양관리 및 집중 요양
 - ⑥ 전문의료활동 - 전문의 결정에 의한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 결정에 따른다.
 - ⑦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9.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에 대한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요양급여비용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정,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을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3.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별지 15을 첨부한다.
4.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1) 식사재료비 : (1일(3식) 9,000원 × 30일 = 270,000원)
 - 2) 간식비 : (1일(2회) 2,000원 × 30일 = 60,000원)
 - 3) 아·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상급병실은 1인실로 운영하고 1일 8,000원 × 30일 = 240,000원)
 - 4)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 5) 특별침실 이용시 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하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실비 부담한다.

제92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④ 장기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 ⑥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⑦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⑧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퇴실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 1) 입소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퇴소 전 본 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2) 퇴소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 ③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원내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소보호자에게 통보 후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④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별지1)

2025년 빌리지포유 제천요양원 입소 비용

1. 입소 수가 내역

2025년 입소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5등급
1일 입소비용	90,450	83,910	79,240

2. 비급여항목 내역

- 식재료비: 1일 3식 9,000원(식사 1회당 3,000원)
- 간식비 : 1일 2,000원
- 상급침실료: 1일 8,000원

2025년 장기요양비용 수가 안내

- 의료보험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급여 20% + 식재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급여 8%(입소이용의뢰서 발급일부터) + 식재료비
- 기초생활수급권자 : 전액면제(입소이용의뢰서 발급일부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0일기준)

(단위:원)

	유형	장기요양보험료				식사재료비 (30일)	간식비 (30일)	총 본인부담 금 (30일)
		요양등급	1일당	총합계	본인부담금			
노인 요양 시설	일반 (20%)	1등급	90,450	2,713,500	542,700	270,000	60,000	872,700
		2등급	83,910	2,517,300	503,460	270,000	60,000	833,460
		3~5등급	79,240	2,377,200	475,440	270,000	60,000	805,440
	경감 (12%)	1등급	90,450	2,713,500	325,620	270,000	60,000	655,620
		2등급	83,910	2,517,300	302,070	270,000	60,000	632,070
		3~5등급	79,240	2,377,200	285,260	270,000	60,000	615,260
	경감 (8%)	1등급	90,450	2,713,500	217,080	270,000	60,000	547,080
		2등급	83,910	2,517,300	201,380	270,000	60,000	531,380
		3~5등급	79,240	2,377,200	190,170	270,000	60,000	520,170
	기초수 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 (입소이용의뢰서 발급일부터)						

구 분		금 액(원)	내 역
비급여	식사재료비	3,000원	3,000원 * 3회 = 9,000원
	간식	2,000원	1,000원 * 2회 = 2,000원
	이·미용비	무료	단, 염색이나 파마는 본인부담
	특별침실 이용료	없음	감염병, 정신이상증상, 임종등 특수사항일 경우
	진료비 + 약값	전액본인부담	
	교통비	제천관내 진료 시 차량지원, 사적인 용무는 본인부담	
	특별의료소모품	본인부담 (보호자 동의)	